
	<h1 style="margin: 0;">규정</h1>	문서번호	TWP-A707	
		제정일자	2021. 01. 06.	
	<h2 style="margin: 0;">구성원 참여·소통에 관한 규정</h2>	개정일자		
		개정번호	페이지	1/6

작성부서	기획예산처	제정일자	2021 01. 06
------	-------	------	-------------

구 분	작 성	검 토			승 인
직 책	담 당	사무처장	교무학생처장	기획예산처장	총 장
서 명					
일 자					

	규정	문서번호	TWP-A707	
		제정일자	2021. 01. 06.	
	구성원 참여·소통에 관한 규정	개정일자		
		개정번호	페이지	3/6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동원대학교(이하 “이 대학”이라 한다)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대학운영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서 대학 구성원 및 교외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구성원 : 교·직원, 재학생
2. 이해관계자 : 졸업생, 학부모, 산업체, 지역사회(지자체, 지역주민) 등

제3조(책무) ① 대학은 대학 및 교육의 운영에 대한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
② 총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운영 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행·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.

제4조(운영방법) ① 이 대학의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 참여 및 소통을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.


1. 대학 제위원회
2. 구성원 대상 간담회
3. 구성원 대상 설명회 또는 공청회(회의, 워크숍, 포럼, 연수 등 포함)
4.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 대상 만족도 및 수요조사
5. 홈페이지 학생게시판
6. 구성원 대상 제안 제도
7. 기타 구성원 간의 참여 및 소통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

② 대학의 각 부서나 학과는 정책이나 사업계획 등을 수립할 때 제1항에서 제시한 참여 소통 활동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대학은 교육운영이나 제도, 혹은 사업의 시행 성과에 대하여 구성원 및 교외 이해관계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대내외적으로 공지 한다.

제5조(운영범위) ① 이 대학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운영상의 주요 제도 도입 또는 정책 결정 시에 구성원 및 교외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과정을 거친다.

1. 학생의 학습권 확보 및 학위취득, 성적 및 학점 취득 등에 관한 사항
2. 교직원의 인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
3.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, 특성화 계획 및 재정계획 등에 관한 사항

	<h1 style="margin: 0;">규정</h1>	문서번호	TWP-A707	
		제정일자	2021. 01. 06.	
	<h2 style="margin: 0;">구성원 참여·소통에 관한 규정</h2>	개정일자		
		개정번호	페이지	4/6


4. 대학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 5. 기타 대학과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결정 등에 관한 사항
- ② 제1항에 제시된 사항 외에도 교육운영 및 서비스 관련 정책이나 제도, 사업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성원 또는 교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수요조사나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6조(운영절차) ① 각 부서 단위별로 정책 및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성원 또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·소통 활동이 필요한 경우,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 활용한다.

1. 시행계획 기안
 2. 참여 소통 활동 진행
 3. 결과보고 및 의견반영
 4. 결과의 활용 및 사후 관리
- ②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, 제7호를 통해 개선된 의견은 다음의 업무 처리 절차를 따른다.
1. 소관 부서에서 검토 후 처리가 가능한 의견은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즉시 결정할 수 있다.
 2.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필요로 하는 의견은 소관 제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.
 3. 구성원 협의가 필요한 의견은 회의체, TF팀, 간담회, 공청회, 설문조사 등 협의 방법을 거친 후 관련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.
- ③ 참여·소통 활동을 통해 시행되는 정책이나 사업의 경우 기안문에 해당 활동 결과를 반영하여 명기한다.
- ④ 제4조제1항 제6호를 통해 접수된 제안 의견 및 아이디어 제안은 별지 제1호 서식을 활용한다.
1.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제시한 의견, 아이디어는 제안의 담당 부서를 지정 후, 담당 부서의 타당성 및 실용성 판단 등 의견을 포함하여 행정조직, 각종 위원회 등에서 검토, 심의하여 대학 발전 및 주요 운영에 참고·적용할 수 있다.
 2. 주관부서는 검토, 심의 결과를 구성원에게 공지한다.
 3. 대학 발전 및 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의견,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.

제7조(환류) ① 구성원 또는 이해관계자의 참여·소통 활동에 있어 시행 부서는 민주적 절차를 준용하며, 협의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활동 결과를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사업이나 제도 시행 성과 평가를 실시할 때 의견수렴의 결과를 적용하여 개선함을 원

	규정		문서번호	TWP-A707
			제정일자	2021. 01. 06.
	구성원 참여·소통에 관한 규정		개정일자	
			개정번호	페이지 5/6

칙으로 한다.

제8조(기타) ① 구성원 또는 이해관계자의 참여·소통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